

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4. 11. 16

제 출 자 :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예산 및 보육 장기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시장으로 지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보완하기 위함.

2. 주 요 골 자

- 조례 제5조 제4항중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”로 수정함.

3. 참 고 사 항

-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

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5조 제4항중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”로 수정함.

구미시 영유아보육조례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,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“영유아”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.
- 2.“보육”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- 3.“보육시설”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4.“보호자”라 함은 친권자,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- 5.“보육시설종사자”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,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연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2장 보육정책위원회

제4조(위원회의 설치)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
2.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
3.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
4. 보호자 대표
5. 관계공무원
6. 구미시의회의원

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

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회의) ①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
2. 보육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3.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
4.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

5.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

6. 기타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8조(위원의 수당)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장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

제9조(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.

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제10조(보육정보센터의 구성)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약간명의 보육지도원을 둔다.

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, 간호사,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시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하며 시장이 임명한다.

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보육정보센터의 업무)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보육에 관한 정보망 구축·운영 및 정보 제공
2. 보육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제공
3.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
4. 보육시설 종사자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 제공
5.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교육
6.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

7.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

8. 기타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전문인력 활용등) 시장은 보육의 질적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내에 어학, 예체능 전공 교사, 대치 교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(보육정보센터의 재정) 보육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·도비 보조금 및 시비로 한다.

제4장 지 원

제14조(보육시설에 대한 지원)시장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 ·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
2. 보육종사자의 인건비
3. 시설운영관리비 및 교재교구비
4. 보육아동 급·간식비
5.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제15조(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)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기준을 정하고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보조금의 반환명령)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은 보육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
2.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
3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

제5장 보 칙

제17조(보육종사자의 재교육 등) 시장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

제19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5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수정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위원회의구성) ① (생략)	제5조(위원회의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u>	④ <u>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u>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